

#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

## (조승래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9028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19. 3. 7.

발의자 : 조승래 · 정재호 · 이후삼  
서형수 · 신경민 · 김종민  
강훈식 · 김태년 · 서영교  
박용진 의원(10인)

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국·공립 특수학교 교장은 「교육공무원법」에 따라 한 차례만 중임을 허용하고 있으나 현행법에 따르면 사립 특수학교의 장은 횟수의 제한 없이 중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국·공립 특수학교 교장과 사립 특수학교의 장간의 중임규정 적용에 관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.

이에 사립 특수학교의 장에 대해서도 한 차례만 중임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·공립 특수학교의 장과 사립 특수학교의 장과의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(안 제53조제3항 단서).

##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

사립학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3조제3항 단서 중 “초·중등학교의”를 “초·중등학교 및 특수학교의”로 한다.

#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특수학교의 장의 중임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당시 특수학교의 장이 2회 이상에 걸쳐 중임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53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임기의 만료일까지 재임할 수 있다.

#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第53條(학교의 장의 임용) ① · ② (생 략)</p> <p>③ 각급학교의 장의 임기는 학교법인 및 법인인 사립학교경영자는 정관으로, 사인인 사립학교경영자는 규칙으로 정하되, 4년을 초과할 수 없고, 중임할 수 있다. 다만, <u>초·중등학교의</u> 장은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.</p>	<p>第53條(학교의 장의 임용) ① · 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 ----- <u>초·중등학교</u> <u>및 특수학교의</u>----- -----.</p>